

# 고양 더샵포레나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 문의) 031-966-2601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4.29.(화)	2025.06.20.(금)	2025.06.25.(수)	2025.06.30.(월)	2025.07.02.(수)~07.05.(토)	2025.07.08.(화)

1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 청약자격을 확인하시어 당첨이 무효처리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순위 청약 가능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일 주택(고양 더샵포레나)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일 주택(고양 더샵포레나)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20.(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091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4.29.(화)**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139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6.25.(수)	2025.06.30.(월)	2025.07.02.(수)~07.05.(토)	2025.07.08.(화)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7-1번지)</li> </ul>	
<p>※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p> <p>※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p> <p>-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p> <p>■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p> <p>-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p> <p>■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5.05.20.)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p>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59-1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17개동 / 일반분양 636세대 중 잔여 254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잔여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5910091	01	039.9476	39	36	116	2101, 2202, 2301, 2302, 2304, 2305, 2306, 2401, 2402, 2406, 2501, 2502, 2504, 2505, 2602, 2603, 2604, 2606, 2701, 2702, 2704, 2705, 2706, 2801, 2806, 2901, 2902, 2903, 2904, 2906,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02	059.9921A	59A	188	101	201, 302, 303, 305, 402, 403, 405, 605, 701, 702, 803, 805, 3103, 3105, 3201, 3203, 3301, 3401, 3402
					102	201, 205, 301, 401, 402, 403, 405, 502, 503, 601, 602, 603, 605, 2903, 2905, 3003, 3201, 3401, 3402
					103	201, 203, 305, 405, 501, 505, 601, 602, 603, 703, 3002, 3003, 3005, 3101, 3102, 3105
					104	206, 306, 606, 906, 1106, 1206
					105	201, 203, 301, 302, 303, 401, 403, 404, 503, 504, 601, 602, 702, 704, 801, 803, 3201, 3202, 3301, 3302, 3303, 3304
					106	204, 302, 303, 304, 501, 502, 503, 602, 603, 604, 701, 702, 802, 3301, 3303, 3304, 3401, 3402, 3403
					107	201, 202, 204, 304, 402, 403, 603, 701, 702, 703, 704, 802, 3201, 3202, 3204, 3301, 3302
					109	201, 402, 601, 602, 702, 901, 2801, 2802, 2901
					110	201, 202, 205, 305, 403, 501, 502, 602, 605, 701, 705, 801, 805, 901, 2902, 3001
					111	203, 204, 401, 404, 405, 501, 605, 704, 705, 803, 804, 805, 2503, 2601, 3005, 3104, 3105, 3204
					112	204, 205, 304, 404, 405, 504, 705, 804, 805, 904, 3004
					113	201, 301, 401, 701, 802, 3401, 3402, 3502
					114	401, 502, 601, 602, 701, 702, 802, 2602
					03	059.9874B
	102	1104, 1204, 1504, 2904				
	103	904, 1004, 1104, 1304, 1504, 1804, 3104				
104	605, 2505					
110	704, 1104, 1404, 1504					
111	802, 1302, 1502, 1702, 1802, 2602					
04	074.9917B	74B	1	112	102	
합 계				254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주택형 (약식 표기)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시
										2025.08.20	2025.12.22	2026.04.20	2026.12.21	2027.04.20	2027.09.20	
039.9476	36	39	116동1~6호	20층이상	36	98,659,200	245,340,800	344,000,000	17,2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120,400,000
059.9921A	188	59A	101동1,2,3,5호 102동1,2,3,5호 103동1,2,3,5호 104동6호 105동1~4호 106동1~4호 107동1~4호 109동1,2호 110동1,2,3,5호 111동1,3,4,5호 112동4,5호 113동1,2호 114동1,2호	2층	21	155,732,400	387,267,600	543,000,000	27,15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90,050,000
				3-5층	52	167,204,400	415,795,600	583,000,000	29,15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204,050,000
				6-9층	61	170,932,800	425,067,200	596,000,000	29,8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208,600,000
				10-19층	2	179,536,800	446,463,200	626,000,000	31,3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219,100,000
				20층이상	52	185,559,600	461,440,400	647,000,000	32,35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226,450,000
059.9874B	29	59B	101동4호 102동4호 103동4호 104동5호 110동4호 111동2호	3-5층	1	162,615,600	404,384,400	567,000,000	28,35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98,450,000
				6-9층	5	166,057,200	412,942,800	579,000,000	28,95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202,650,000
				10-19층	18	174,374,400	433,625,600	608,000,000	30,4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212,800,000
				20층이상	5	179,250,000	445,750,000	625,000,000	31,25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218,750,000
074.9917B	1	74B	112동2호	1층	1	183,265,200	455,734,800	639,000,000	31,95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223,650,000	

## 4

##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국내</b>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li> <li>■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청약신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주택(고양 더샵포레나)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li> <li>- 동일 주택(고양 더샵포레나)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li> <li>-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li> <li>-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li> </ul> </li> </ul>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li> <li>■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b>900%</b>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li> </ul>

## 5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5.06.30.(월) ~ 2025.07.09.(수) (10일간)</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5.06.30.(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당첨자 전원	25.07.02.(수)~25.07.05.(토)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견본주택</li> <li>-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7-1번지</li> <li>-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li> </ul>
예비 입주자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방식 등 은 별도 통보 예정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분양 홈페이지(<https://고양더샵포레나.kr>)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순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반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예비입주자)			
공통 기본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 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그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첨부필수임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발급기간: 제출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부적격 통보받은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 사실증명원	배우자 세대원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당첨자격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등·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모든 당첨자는 계약전에 당첨자격 서류검수를 완료하셔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	25.07.08.(화) (10:00~17:00)	'고양 더샵포레나' 견본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7-1번지)	031-966-2601

-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고양 더샵포레나' 홈페이지(<https://고양더샵포레나.kr>)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상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홈페이지 서식 게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본인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a href="https://www.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a> )에 접속, 구매 및 출력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신한은행	100-037-545272	원당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계약자일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으로 기재)"
- ※ 계약금 납부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 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으로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상기 모계좌 [신한은행 100-037-545272, 예금주: 원당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5.07.09.(수) 10:3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5.07.09.(수)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일에 참석하지 않는, 무순위 예비입주자는 당첨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일자 는 추후 통보합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12,000,000	1,200,000	10,800,000
59B	12,000,000	1,200,000	10,800,000
74B	13,000,000	1,300,000	11,700,000

- 39m<sup>2</sup>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우리은행	1005-204-721869	(주)포스코이앤씨
잔금	우리은행		(상동)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건본주택에서는 직접 수납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별도계약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구분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약금	우리은행	1005-204-721869	(주)포스코이앤씨
	잔금	우리은행		(상동)

- 추가 선택품목은 각 품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십시오.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여 주십시오.
- 상기 계좌로 납부 후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계약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는 수납하실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 약정금액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호수에 따라 건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약식표기)	설치 대수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
					계약시	입주지정일		
시스템 에어컨	39	2대	2개소(거실+침실1)	3,570,000	357,000		3,213,000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59A	2대	2개소(거실+침실1)	4,030,000	403,000		3,627,000	
		4대	4개소(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30,000	633,000		5,697,000	
	59B	2대	2개소(거실+침실1)	3,730,000	373,000		3,357,000	
		4대	4개소(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20,000	602,000		5,418,000	
	74B	2대	2개소(거실+침실1)	3,740,000	374,000		3,366,000	
4대		4개소(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80,000	628,000		5,652,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한 세대는 시공 및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계약 후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 및 실외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
- 드레스룸 수납 옵션(39, 59A타입)을 선택하더라도 해당 실만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프리미엄 키친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약식표기)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프리미엄 키친	39	▶고급 주방가구(유리 수동플랩 상부장) + 엔지니어드스톤 고급 주방 벽/상판 + 디자인후드 + 3구 인덕션(삼성전자)	6,070,000	607,000		5,463,000
	59A		11,800,000	1,180,000		10,620,000
	59B	▶고급 주방가구(유리 수동플랩 상부장) + 엔지니어드스톤 고급 주방 벽/상판 + 디자인후드 + 3구인덕션(삼성전자)	10,440,000	1,044,000		9,396,000
	74B		11,040,000	1,104,000		9,936,000

- 프리미엄키친 옵션 미선택시 평면, 입면 형태가 선택형과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분양서류,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가전제품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약식표기)	규격 / 제품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4도어 냉장/냉동고	39	4도어 냉장/냉동고 (삼성 비스포크)	3,960,000	396,000	3,564,000	-	
1도어 냉장/냉동/김치 + 수납장	59A / 59B / 74B	냉장/냉동/김치(삼성 비스포크) + 톨수납장	7,900,000	790,000	7,110,000	-	
인덕션	전타입	3구 인덕션 (삼성)	1,280,000	128,000	1,152,000	*프리미엄 키친 옵션 미 선택시 가능	
전기오븐	전타입	전기오븐 (삼성)	400,000	40,000	360,000	-	
식기세척기	74B	식기세척기 (삼성)	1,090,000	109,000	981,000	-	
실링팬	59B	루씨에어(106MM)	840,000	84,000	756,000	*루미나 2.0 옵션 선택시 추가 가능	
	59A / 74B	루씨에어(132MM)	890,000	89,000	801,000		
청정환기시스템	스탠다드형	59A / 59B / 74B	청정환기시스템	940,000	94,000	846,000	-
	프리미엄형	59A	청정환기시스템	4,280,000	428,000	3,852,000	-
		59B	청정환기시스템	4,270,000	427,000	3,843,000	-
		74B	청정환기시스템	4,370,000	437,000	3,933,000	-
욕실복합환풍기	39	1개소(욕실 천장)	610,000	61,000	549,000	-	
	59A / 59B / 74B	2개소(부부욕실, 공용욕실 천장)	1,220,000	122,000	1,098,000	-	
드레스룸 제습기	74B	드레스룸 제습기	2,000,000	200,000	1,800,000	-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스쿡탑 대신 인덕션이 설치될 경우 주방까지 별도의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의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는 전기차단 전용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인덕션 옵션 추가금액은 가스배관 및 차단기 설치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추후 가스사용이 필요할 경우 입주 이후 개별 입주자 비용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39타입(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시)은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한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해당 제품사에서 개인정보 요구로 계약자가 직접 의뢰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정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청정환기시스템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장치가 설치됩니다.
- 39, 59A, 59B 타입은 식기세척기 및 드레스룸 제습기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39 타입은 프리미엄바스 및 욕실복합환풍기 옵션 1개소 적용이고, 59타입 이상부터 프리미엄바스 및 욕실복합환풍기 옵션 2개소 적용됩니다.
- 실링팬 유상옵션은 스마트 감성조명 루미나 유상옵션 선택시 선택이 가능하며, 39타입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59B타입은 우물천장 사이즈로 인해 106mm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39타입은 침실 혹은 거실 천장에 카세트형 환기장치가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청정환기시스템의 유상옵션 선택은 불가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약식표기)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중문	39		▶3연동 슬라이딩 유리도어 + 신발장 하부 간접등	1,930,000	193,000	1,737,000
				1,980,000	198,000	1,782,000
	59A		▶여닫이 유리도어 + 신발장 하부 간접등	1,700,000	170,000	1,530,000
	59B	▶3연동 슬라이딩 유리도어 + 신발장 하부 간접등		2,040,000	204,000	1,836,000
74B	1,980,000			198,000	1,782,000	
디자인 월	39		▶거실 대형 아트월(600X1200, 중국산 연단가) + 아트월 상단 등박스 + 거실 후면/복도 LPM 벽판넬 + 일부 구간 픽처레일	3,010,000	301,000	2,709,000
	59A			3,420,000	342,000	3,078,000
	59B	중문 미선택시		3,470,000	347,000	3,123,000
		중문 선택시		3,400,000	340,000	3,060,000
	74B	중문 미선택시		3,140,000	314,000	2,826,000
		중문 선택시		3,060,000	306,000	2,754,000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벽체	39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체(고급형)	1,410,000	141,000	1,269,000
	59A			3,080,000	308,000	2,772,000
	59B			2,790,000	279,000	2,511,000
	74B			3,050,000	305,000	2,745,000
바닥재 (SPC)	39		▶LX 에디톤 바닥재(거실/복도/주방)	1,520,000	152,000	1,368,000
	59A			1,760,000	176,000	1,584,000
	59B			1,710,000	171,000	1,539,000
	74B			2,080,000	208,000	1,872,000
프리미엄 바스	39		▶고급도기/수전 + 샤워부스/액세서리 색상 변경	1,550,000	155,000	1,395,000
	59A/59B/74B			3,180,000	318,000	2,862,000
드레스룸 수납	39		▶침실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수납	4,330,000	433,000	3,897,000
	59A			4,650,000	465,000	4,185,000

- 가구류 및 현관 중문의 제조사, 프레임, 유리, 하드웨어(경첩, 레일, 작동방식 등) 상세 등은 건본주택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공구별로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 미선택 시, 인조대리석(MMA) 주방상판과 주방벽체 타일마감이 적용되며 상판과 타일이 접하는 부분에는 뒷턱 또는 뒷선반이 설치됩니다. 기본형/유상옵션형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상판 전면 두께(다용도실 가구 상판 참조)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명**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약식표기)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스마트 감성조명 루미나2.0	59A / 59B	▶거실 우물천정 내 직간접 특화조명 + 각 실 감성조명	3,500,000	350,000	3,150,000
	74B		4,290,000	429,000	3,861,000

- 스마트 감성조명 루미나 2.0 유상옵션 선택시 거실 우물천정을 활용한 직간접 특화조명(하부직하조명[색온도, 밝기제어] + 상부 간접조명[점소등 제어])이 설치되고, 침실등의 색온도와 밝기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룸 및 일부침실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 옵션계약안내문 참조)
- 거실 감성조명은 월패드 및 거실스위치, 침실 감성조명은 침실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 거실 우물천정 직간접 특화조명 몸체 연결부위 발생하는 이음새의 수량 및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복도등 아트월면 상부 LED 간접조명 및 주방 우물천정 간접조명은 스마트 감성조명 루미나 2.0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스마트홈 & 시큐리티	전타입	▶"13인치 월패드 + 안면인식 도어폰 + 지문인식도어락	710,000	71,000	639,000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의무)되는 제품 대신 13인치 월패드, 지문인식 푸시풀 도어락, 안면인식 도어폰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미선택 시, 기본 제공(의무)되는 10인치 월패드, 푸시풀 도어락(지문인식 기능 제외), 일반 도어폰(안면인식 기능 제외)이 제공됩니다.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상품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입주자의 입주 개시 1~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 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8년 02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및 납부한 후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 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 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border="1">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 rowspan="2">60㎡ 이하</td> <td rowspan="2">1억 6천만원</td> <td rowspan="2">1억원</td> </tr> <tr> <td>단독주택</td> </tr> <tr> <td rowspan="2">제53조제9호나목</td>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d rowspan="2">85㎡ 이하</td> <td rowspan="2">5억원</td> <td rowspan="2">3억원</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p>함</p>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p>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p> <p>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p> <p>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5-101-0001800 호	₩ 222,434,55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시공사
상 호	원당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포스코이앤씨	(주)한화
법인등록번호	285071-0006402	174611-0002979	110111-0002959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13번길 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고양더샵포레나.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7-1번지

■ 분양 문의 : 031-966-2601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